

원데이 언법

2017년 5급 일반승진

정답표 (A 책영)

①②①①⑤ ③①④④②

②③②④③ ⑤①⑤②④ ③②③①④

01

①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적용범위 : 현재판례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업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헌재 1989.12.18. 89헌마32 등)

02

②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03

①

■ 현재판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한다 …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함에 속하는 것이고, 집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04

①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05

⑤

제55조 ①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06

③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금지 - 원칙적으로 전국민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한 다음 후보자의 가족, 정당이나 후보자에 의하여 선임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극소수의 선거관계인들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위헌 - 현재 1994.07.29. 93헌가4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합헌),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합헌), ㉢정당과는 달리 단체에게 일률적으로 선거운동금지(합헌) → 그 후 단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한정적으로 열거(공선법 제87조),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합헌 - 2017.06.29. 2016헌가1) ★★★

07

①

경제질서 관련 위헌인 판례(5개) 이외 모두 합헌

08

④

헌법	선출방법 (간·직·간·직·간·간·직)
제헌헌법 (1948년)	국회에서의 간선
제1차 개정헌법 (1952년)	직선
제3차 개정헌법 (1960년)	국회에서의 간선(민의원·참의원 양원합동회의)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직선(단, 대통령 궐위시 잔임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간선)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국회에서의 간선(X)
제8차 개정헌법 (1980년)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국회에서의 간선(X)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직선

09

④

성범죄 의뢰인 취업제한 사건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헌 -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X)**,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O), 평등권 침해(X), 위 취업제한제도를 법 시행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X)) (헌재 - 2016.03.31. 2013헌마585) □ "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 평등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의료인의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는데,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3헌마585) -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최초의 판결 ★★★

10

②

재산권이 침해된 판례(多) - 확실히 암기!!! 이외 모두 합헌

11

②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2

③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3

②

구분	특징	규정
건국 헌법	승인 및 합법화단계	·정당은 존재하나 헌법에 관련 규정 없음(국회법에 규정)
2공화국(1960년) 헌법	헌법의 편입단계	·최초로 위헌정당해산제도 헌법 도입
3공화국(1962년) 헌법	초정당국가적 경향	·정당이탈·변경·해산시 자격상실(다만, 합당·제명은 예외) ·대통령·국회의원 입후보의 필수적 정당추천제
4공화국(1972년) 헌법	정당국가화 경향 후퇴	·무소속 허용
5공화국(1980년) 헌법	정당국가적 경향 다소 강화	·정당의 국고보조금제도 신설 ·대통령 입후보 및 선거인 정당가입 가능
현행(1987년) 헌법	정당의 민주화 강조	·정당의 조직과 활동뿐만 아니라(1980년 헌법) '목적'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내용 추가

14

④

■ 탄핵소추사유 : ①'직무'집행(고유업무 + 직무관련행위, 前職의 행위(취임 전)는 포함X), ②위헌·위법(불문헌법도 포함.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포함!), ③고의·과실(법의 무지도 포함) / 중대성 - 헌재판례 "헌법 제65조 제1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안됨. 파면결정을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하여야 함(조문(X)·판례(O)) 중대한 법위반? →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 [cf]형소법 §255준용하여 현재의 결정선고 전까지 국회는 탄핵소추를 철회 可 ★

15

③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

⑤

■ 헌재판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헌재 2003.10.30. 2000헌바67)

17

①

■ 알 권리의 실현이 법률의 제정이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검찰청에 ‘복사신청’)(헌재 1991.05.13. 90헌마133)

18

⑤

사죄광고 사건 -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사죄광고**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포함시키는 것(한정위헌 - ‘대표자’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O), ‘법인’의 인격권 침해(O)) (헌재 1991.04.01. 89헌마160) ★

19

②

■ 내용 :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대법원, 헌재 모두 §10와 §17등을 근거규정으로 봄) / **헌재판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등도 포함한다.”(헌재 2007.05.31. 2005헌마1139) ★

20

④

■ 제3차 소송당당의 인정여부(부정설) : **헌재판례** “제3차 소송당당’은 (국회의원 다수이든 소수이든) **예외적으로 ‘법률(헌법(X))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부정설(인정할 필요성은 긍정!)).”, “그것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체계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 → “국회의 동의 없이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or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의 **‘전략동맹 2015 합의문’**이 체결된 경우, ‘국회의원’이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도 국회 대내적인 관계에서만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심·표결권**’의 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cf]** i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2013헌라3), ii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2013헌라3) ★

21

③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2

②

4분의 1 : ■ 국정조사 발의(국감조법 제3조 제1항) **[cf]**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1/3 이상, 공청회·청문회 요구 1/3 이상

23

③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개시한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청부합동감사**(권한침해 인정) **[주의]** “중앙행정기관’이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의 대상을 **특정하여야** 하고 포괄적·사전적 감사나 일반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 2009.05.28. 2006헌라6)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목적성** 감사 - 감사원법에 근거(합헌 - 헌재 2008.05.29. 2005헌라3)

24

①

■ 사전검열금지원칙의 한정적 적용 : **헌재판례**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전검열행위’ 자체의 범위를 헌법 제21조의 진정한 목적에 맞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 역시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제**(합헌 - 헌재 2010.07.29. 2006헌바75)

25

④

■ **현재판례**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국무총리(X), 대법원(X)) -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O(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행정수도이전 사건 - 위헌(헌재 2004.10.21. 2004헌마554))